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삶과 역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하여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여성사 연구 활동 지원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여성사 연구 공간 제공, 사료 수집,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연구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시민의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0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사 연구"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출생하거나 활동한 여성의 역사·생애·문화·사상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구기관등"이란 여성사 또는 지역의 역사·문화 등 관련 분야의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전시·보존·공유 사업

2. 여성사 편찬 및 영상 제작 관련 사업

3. 여성사 교육·문화·전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보존·계승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연구기관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연구 지원 등) ① 시장은 여성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지원) 시장은 여성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여성사 조사·연구, 편찬 및 영상 제작,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경비(안 제4조)

○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제공, 여성사 관련 연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현 미